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호외(號外) 1927(昭和 2)년 8월 31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81(號)

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경유(經由) 조선(朝鮮) 내(內) 사설철도회사선(私設鐵道會社線), 철도성선(鐵道省線) 간(間) 화물연대운수규칙(貨物連帶運輸規則)을 아래[左]와 같이 정(定)하고, 1927(昭和 2)년 9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(施行)함.

1927(昭和 2)년 8월 31일

조선총독 임시대리(朝鮮總督臨時代理)

육군대장(陸軍大將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경유(經由) 조선(朝鮮) 내(內) 사설철도회사선(私設鐵道會社線), 철도성선(鐵道省線) 간(間) 화물연대운수규칙(貨物連帶運輸規則)

제1조(條) 조선국유철도선(朝鮮國有鐵道線) 경유(經由) 조선(朝鮮) 내(內) 사설철도회사선(私設鐵道會社線)·철도성선(鐵道省線) 간(間) 화물(貨物)의 연대운수(連帶運輸)를 한 경우는 본(本) 규칙(規則)에 의(依)함.

제2조(條) 화물(貨物)의 연대취급(連帶取扱) 구간(區間)은 아래[左]의 각(各) 역(驛) 상호간(相互間)으로 함.

철도성선(鐵道省線)

각역(各驛: 덕도선[德島線], 고지선[高知線], 대군선[大郡線], 작비선[作備線]을 제[除]함)

조선(祖先) 내(內) 사설철도주식회사선(私設鐵道株式會社線)

조선철도선(朝鮮鐵道線)

경동선(慶東線)

동촌(東村), 하양(河陽), 영천(永川), 아화(阿火), 건천(乾川), 안강(安康), 포항(浦項), 경주(慶州), 불국사(佛國寺), 울산(蔚山)

경북선(慶北線)

상주(尙州), 함창(咸昌), 점촌(店村)

충북선(忠北線)

청주(淸酒), 내수(內秀), 청안(淸安)

경남선(慶南線)

함안(咸安), 군북(郡北), 반성(班城), 남문산(南文山), 개양(開陽), 진주(晉州)

황해선(黃海線)

재령(載寧), 신천온천(信川溫泉), 신천(信川), 신완(新院), 하성(下聖)

함남선(咸南線)

오로(五老), 장풍(長豐), 상통(上通), 서신흥(西新興)

전남선(全南線)

광주(光州), 담양(潭陽)

제3조(條) 아래[左]의 화물(貨物)은 연대운수(連帶運輸)의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.

철도성(鐵道省)이 정(定)한 급외품(級外品: 안전한 성냥[燐寸]으로 양철[葉鐵]로 포장[包裝]한 목제상[木製箱]에 수용[收容]된 것을 제[除]함) 및 1개(箇)의 중량(重量) 3톤(噸·ton), 용적(容積) 3백 입방척(立方尺) 또는 소화물급(小貨物扱)에 있어서는 길이[長] 14척(尺), 대절급(貸切扱)에 있어서는 길이[長] 30척(尺)을 초과(超過)한 것

제4조(條) 조선(朝鮮) 내(內) 사설철도회사선(私設鐵道株式會社線), 조선철도(朝鮮鐵道) 경동선(慶東線), 황해선(黃海線) 및 함남선(咸南線) 내(內) 차급(車扱)으로 연대(連帶)하는 화물(貨物)의 1구(口)는 5(噸·ton), 10(噸·ton), 15(噸·ton), 20(噸·ton), 25(噸·ton), 30(噸·ton)의 것 또는 위[右]의 제한(制限) 톤수(噸數)에 대한 동(同) 선(線) 내(內) 운임(運賃)을 지불(支拂)한 것에 한(限)함으로 함.

제5조 화물(貨物)의 연대운수(連帶運輸)에 관하여 본(本) 규칙(規則)에 정(定)한 것 외(外)에 1925(大正 14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65호(號)에 의하여 1923(大正 12)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사고(社告) 제88호(號) 대철도성선 화물연대 운수규칙(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) 및 동(同) 제104호(號)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[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]을 준용(準用)함.